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안내문 대표번호 : 1551-6881

※ 본 안내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과 관련한 서류접수 방법은 '건본주택 방문접수'로 진행 합니다.**

등기우편접수는 불가하며 건본주택 운영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 바랍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방문접수(건본주택)도 가능합니다.

※ 단, 건본주택에서 청약신청 시 자격입증 서류 및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안내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6-1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M5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 지상 44층 3개동 총 868세대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입주자모집공고문(예정일:2026.10.08.예정) 참고

■ **입주예정시기** : 2031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총 86세대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m ²)				경제자유구역 배정 세대수	입주 시기 (예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주차장포함)	계약 면적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084.9443A	84.9443	37.2676	122.2119	67.0610	189.2729	26(130)
	084.9210B	84.9210	36.7429	121.6639	67.0427	188.7066	11(55)
	084.8592C	84.8592	35.4322	120.2914	66.9939	187.2853	13(65)
	084.9540D	84.9540	36.9529	121.9069	67.0687	188.9756	12(60)
	103.8518A	103.8518	43.1930	147.0448	81.9881	229.0329	13(65)
	103.9916B	103.9916	44.2084	148.2000	82.0984	230.2984	11(55)
	합계						86(430)

31년 06월
(예정)

※ () 수치는 예비입주자 배정세대로 500%적용하였습니다.

※ 상기 주택형은 인-허가 과정 상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분양사업소 또는 건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공급일정 안내 [예정]

구분	일정 (예정)	비고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접수	'26년 09월 28일(월) ~ '26년 10월 02일(금) [5일간] (11:00 ~ 16:00)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해구 87-1,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건본주택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누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는 해당기간 내 현장 접수만 인정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26년 10월 08일(목)	*일간신문 및 당사홈페이지(https://www.arkone-prugio.com/)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26년 10월 12일(월)	*개별 SMS 통보 예정
특별공급 청약접수	'26년 10월 19일(월)	*인터넷신청 한국부동산원'청약Home'(www.applyhome.co.kr)(09:00~17:30)
당첨자 발표	'26년 10월 27일(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계약체결	'26년 11월 08일(일) ~ '26년 11월 10일(화)	*장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 87-1,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건본주택 *일정 및 시간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arkone-prugio.com/)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사업주체 분양사업소 또는 건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와 관련한 서류일체로 완비하여 해당 기간 내 방문접수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사전접수 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와 관련한 서류 일체는 해당 기간 내 '건본주택 방문접수'에 한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자 포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여야만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III

특별공급 사전접수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			
공통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재직회사	재직회사 발급(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자등록증 1부	재직회사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사업자등록증 하단부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여부 : 여(V) 부() 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된 사업장 명세]도 함께 제출
	○		재직증명서 1부	재직회사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재직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재직기간 명시(필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인사기록카드 1부	재직회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연속하여 재직한 기간 확인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이상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발급)
	○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	소속업체 인감 날인 제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무주택서약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이름, 청약예치금 및 청약통장 가입일 및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부동산원 → 청약통장 가입내역 → 인쇄/이용시간 09:00~17:30) ※ 모집공고 예정일 기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팩스 또는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발급)
내국인	○		신분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주택공급신청용) ※ 온라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제출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 3자 대리 접수 불가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날인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배우자 (분리세대)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 전체 포함, 세대구성 및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1부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전체포함 (“상세”로 발급)
동점자 발생 시 부양가족 산정을 위한 추가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제출 필요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서류발급일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서류발급일까지로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본인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본인	재외동포 신청의 경우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재직회사	법인 신청의 경우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재직회사	

제 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본인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인 **2026. 10. 08.(목)(예정) 3개월 이전**까지 발행분(세대 구성원 변동 시 변동된 날 기준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접수가능 합니다.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 ※ **신청자의 착오 및 미기재,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청약 신청분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IV

신청자격 및 요건

■ 특별공급 자격요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자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 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

구분	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상 신청 시) 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이전까지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시 기존 통장으로 재변경이 불가합니다.
-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합니다.
-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하여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 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 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위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V

대상자 선정 방법

■ 대상자 선정 방법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나목을 적용합니다. 본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름.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확정자 및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청약 미신청시 계약불가)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홈페이지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까지 게시하고, 특별공급 대상자 및 탈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그 선정결과를 통보함.

VI

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서류접수는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견본주택 방문접수'로 시행합니다.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는 해당 기간 내 현장 접수만 인정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중사자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외 타 지역 지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청한 경우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특별공급에 있어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구비서류 중 재직회사 서류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하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추천일 이후 사업주체에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격자로 판명된 분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주택소유사실 등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순위 등)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본인에 한함)
- 특별공급(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 청약 신청은 1세대 1건만 가능하므로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며,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의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 내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에 따라 전매기간이 상이합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심의심사 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단, 향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중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상실 및 공급받은 주택의 계약이 취소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재공급하게 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시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인사기록카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서류 미제출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의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타 지역(인천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으로 발령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미충족 시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환수 조치)되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종전 근무 기업의 근무 기간 합산 불가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A)에서 6개월간 근무, 이직하여 현재 동 구역 외국인 투자기업(B)에서 10개월 근무
→ (B)기업 근무기간만 인정

예시 2) 타 지역의 지사로 발령받은 근무자는 신청 불가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또는 재직기간 삭감

: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A)에서 10년 근무, 3개월 전 타지역 지사로 파견, 발령받아 근무 한 경우
→ 신청불가
: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A)에서 10년 근무, 타지역 지사로 파견 갔다가 2년 전 복귀
→ 2년 인정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6년 10월 08일(목) 공고 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분양사무소 및 안내서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3.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분양문의 : 1551-6881 홈페이지 : <https://www.arkone-prugio.com/>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 설계 및 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사전 현장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7-1,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건본주택



※ 건본주택 관람 및 운영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arkone-prugio.com/>

※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51-688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소속업체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인천광역시 전입일 :		
연락처	자택 : () - , 휴대폰 :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부서		직책 및 직위	
소재지주소			☎() -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년 월		

2. 가족사항(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구성 전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가족 수가 많은 경우 별지작성이 가능함.

3. 주택 특별공급 신청내역

구역 및 지구	위 치	신청주택형(하나만 선택하여 “V”표시)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업무단지 5BL	청라동 86-1	☐ 84.9443A	☐ 84.9210B	☐ 84.8592C	☐ 84.9540D	☐ 103.8518A	☐ 103.9916B

4. 첨부서류

공통서류		내국인		외국인,재외국민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원본대조 필)	☐	1. 신분증 사본	☐	1.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
2.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 필)	☐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택공급 신청용으로 직접기재)	☐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재외동포)	☐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인 경우)	☐	3. 인감도장 (날인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서명)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인 경우)	☐	4. 주민등록(표)등본(본인) (※ 발급 시 안내문 참조)	☐		
5. 재직증명서(소속업체 사용인감 날인)	☐	5.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에 한함)	☐		
6. 인사기록카드(원본대조 필)	☐	6.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발급 시 안내문 참조)	☐		
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업체 사용인감 날인)	☐	7.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시 안내문 참조)	☐		
8.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소속업체 사용인감 날인)	☐	8. 동점자발생 시 부양가족 산정을 위한 추가서류 (※ 발급 시 안내문 참조)	☐		
9. 무주택서약서 (신청인 본인 인감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 서명)	☐				
10.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약홈→청약통장 가입내역→인쇄 이용시간 09:00~17:30)	☐				
11.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 확인한 해당사항 괄호 안에 “V”으로 표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

(인)

위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소속업체 :

(소속업체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무주택 서약서

신청아파트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공동주택		
성 명	(인)	신청주택형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상기 본인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 및 과거당첨사실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 등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다른 분양주택 청약 제한) 및 동·호 배정을 받더라도 계약체결 불가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확 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6.10.08.예정)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2018.12.11.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취득도 유주택으로 간주됨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에 따름(특별공급 안내문 참조)			(인)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			(인)
2026년 월 일			
상기 서약서 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신청시 신청인 : _____(인)			
대리 신청시 대리인 : _____(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여부를 확인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 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주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청라스마트시티, (주)대우건설, 도담에셋(주)
개인정보의 수집·활용항목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시 작성한 개인정보 및 제출된 서류 일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목적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3년 또는 개인정보 제3자가 제공 동의 철회 전까지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거절하실 수 있으며, 거절하실 경우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신청자 본인 성명 (본인 인감날인)